

## 직무발명규정

2009. 2. 9 제정	2009. 4. 13 개정
2009. 9. 8 개정	2011. 9. 20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11. 11 개정
	2021. 3. 8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명진흥법」 및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하며,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1., 2021.3.8.>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노하우 및 기술정보 등의 지식재산을 말한다.<개정 2016.9.21>
2. “직무발명”이란 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6.9.21>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6.9.21>
4. “교직원 등”이란 교원, 직원(계약직 포함)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9.21>
5. “기술료”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양도, 실시허여, 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 등에 의하여 입금된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6.9.21.>
6. “기술이전 기여자”란 이전기술의 발굴, 마케팅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신설 2016.9.21>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 등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다만,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9.21>

② 교직원이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그

### 3-2-19-2 직무발명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자에 대한 지분비율을 명기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양도증(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의 내용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9.4.13, 2009.9.8., 2016.9.21>

- ② 산학협력단장은 전항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교직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한다.<개정 2016.9.21.>
- ③ 발명자는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별지 제5호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승계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6.9.21>
- ④ 산학협력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9.21>

제6조(심의기구) 직무발명에 관한 심의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09.4.13>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9.9.8., 2016.9.21>

1. 신고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등록 여부
  4.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여부, 권리의 유지 또는 포기 등의 여부
  5.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 실시허여, 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6. 보상금액, 지급기준,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6.9.21>
  8.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심사를 외부 공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의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가 확정된 국내출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전결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9.11.11>

제8조 삭제 <2009.9.8>

- 제9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 없이 직무발명 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문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포함)로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2016.9.21>
- ②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권리의 유지 또는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을 부담한다. 단, 발명자는 직무발명 출원에 대한 경비를 연구비 중 직접비 항목에서 산출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 적정한 금액을 과제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직무발명 출원 및 등록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2016.9.21>

- ②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출원 및 권리 유지를 위하여 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개정 2016.9.21>
- ④ 해외 출원의 비용부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 등을 결정한다.<신설 2009.9.8>
- ⑤ 개인명의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전할 경우 산학협력단은 명의변경 비용만 지급하며, 발명자 개인이 직무발명 출원 및 등록,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발명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09.9.8., 개정 2016.9.21>
- ⑥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포기하여 직무발명의 권리가 발명자의 명의로 이전될 경우, 명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신설 2009.9.8., 개정 2016.9.21>

제11조(발명의 보상) ①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기술이전 등의 처분으로 인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직무발명의 기술료 수입의 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21>

1. 기술료 수입에서 발명자가 부담한 출원 및 권리 유지 비용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9.21>
2. 기술료 수입에서 산학협력단이 부담한 출원 및 권리 유지 비용과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산학협력단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9.21>
3. 기술료 수입에서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에게 지급한 제비용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발명자에게,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학협력단에게,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각각 지급한다.<개정 2016.9.21>
4. <삭제 2016.9.21>
5. <삭제 2016.9.21>

3-2-19-4 직무발명규정

③ <삭제 2016.9.2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1조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 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9.21>

제13조(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지 않기로 확정하여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발명에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15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손해배상) 산학협력단은 발명자가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9.21>

제17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개정 2016.9.21>

제18조(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직무발명의 권리존속 여부)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권리에 관하여는 등록 후 3년을 초과한 직무발명 권리의 유지를 위한 연차료 및 유지 관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전 실시 등 권리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8., 2016.9.21>

- 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이 등록된 후 3년 동안 기술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2년 이내에 기술이전의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검토한 후

권리 유지 및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9.9.8., 2016.9.21>

- ③ 산학협력단의 권리존속 포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명자는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하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권리존속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9.9.8>
- ④ 산학협력단에서 직무발명 존속을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발명자가 원할 경우 직무발명 권리를 발명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단, 명의변경에 대한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신설 2009.9.8., 2016.9.21>

제19조의2(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 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신설 2011.9.20>

-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 기업에 기술 이전 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신설 2011.9.20>
-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 과제 기술료: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상기1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경우의 기술료<신설 2011.9.20>

제19조의3(기술료의 사용) ①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신설 2011.9.20>

-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사업주관 해당 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신설 2011.9.20>
-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기술이전 관련비용,기술이전보전비,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재투자 등 총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신설 2011.9.20., 2016.9.21>

②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 한다.<신설 2011.9.20>

제19조의4(사용절차)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를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한다.<신설 2011.9.20>

- 1.기술이전 보전비는 관련비용 공제후 기술료의 20%로 하며, 그 사용 용도는 외부기업·전문가 등에 위탁 의뢰한 경우의 위탁수수료 및 해당 기술의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교직원의 기술이전 인센티브로 사용하며,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9.20>
- 2.기술료 중 대학지분은 매년 회계 연도말에 결산 후 기술이전기금으로 적립한다.<신설 2011.9.20>

제20조(준용 및 적용범위) ① <삭제 2016.9.21>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3-2-19-6 직무발명규정

부 칙

-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출원한 것과 등록된 권리는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승계하기로 결정한 출원 및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는 제11조의 비용부담 규정 및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개정, 제8조 삭제, 제9조 제1항 개정, 제10조 제1항 개정 및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제19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한다.(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신설)

부 칙<2016. 9. 2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고하는 직무발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1. 1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8.>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발명의 내용 설명서

등록번호	산학협력과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개

결재	담당	과장	단장	총장
경유	기획과장		기획처장	

## 발명의 내용 설명서

선형기술조사 \_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www.yeskisti.net>) 미국 특허청(<http://www.uspto.gov/patft>) 등 이용

제출자(발명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제출일자	

### 1. 선행기술과의 대비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본 발명 대비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본 발명 대비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 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기술요약	참고문헌과 비교시 본 발명의 특징

### 3.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3-2-19-10 직무발명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심사결과 통지서

등록번호	산학협력과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개

결재	담당	과장	단장	총장
경유	기획과장		기획처장	

## 심사결과 통지서

발명신고서 접수번호		발명신고서 접수일자	
발명의 명칭			
발명자			
본교 직무발명 규정 제5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합니다.			
심의기관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승계여부	<input type="checkbox"/> 승계		<input type="checkbox"/> 포기
출원국가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국외(국외의 경우 출원국 기재)
포기사유 및 기타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이의 신청서

등록번호	산학협력과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개

결재	담당	과장	단장	총장
경유			기획과장	기획처장

## 이의 신청서

발명의 명칭				
발명자				

이의 신청 내용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발명에 대한 심의를 직무발명심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직무발명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 신고자: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1.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 1부. 끝.

